

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

1 보고 근거

-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- 정관 변경 시, 시장 인가 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

2 개정 사유

- 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(20. 7. 16.) 개정사항 반영

〈「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」 주요내용〉

- '이사회 안건 제출권' 및 '정보열람 요구권'을 투자·출연기관 정관에 반영

3 주요 내용

- 비상임이사 권한 신설(정관 제14조의2)
 -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 이사회 안전제출권 및 안전 관련 정보열람 요구권 신설

4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'21. 3. 26.)
-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 신 설 >	제14조의2(비상임이사의 안전제출권 등)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	부칙(20 . . .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